

충청북도 6.25전쟁 민간인 희생자
위령사업 지원 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수석전문위원 손윤목

충청북도 6.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이 조례안은 2016년 2월 24일 엄재창 의원 등 7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16년 2월 2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- 6.25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, 충청북도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- 도지사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함(안 제3조)
-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 지원 대상 및 업무 판단 기준을 정함(안 제4조)
- 도지사가 도내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)

4. 검토의견

금번 제정조례안은 6.25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, 충청북도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,

주요내용으로는

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하였으며, 안 제4조에서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 지원 대상 및 업무 판단 기준을 정하였으며, 안 제5조에서는 도지사가 도내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금번 제정조례안은 한국전쟁 전후 기간에 희생된 민간인 중, 「진실·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」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와 사법적 판단을 통해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로 확인된 사람들을 추모하고, 아픔을 치유함으로써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서, 민간인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과 지원기준,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과 화해 조치를 위한 사업의 지원 등 조례제정 취지와 구성이 적절하다고 사료됨.

붙임 : 충청북도 6.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 1부. 끝.